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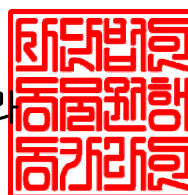
동물권행동 카라

수신자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경유) 김선기 대표교섭위원, 김선아 조직차장, 최민경 카라분회 사무장
제 목 민노총 카라 분회와의 원만한 교섭을 위한 제안 사항

-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사)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이 인간의 일방적인 착취와 이용에서 벗어나 존엄한 생명으로서 그들 본연의 삶을 영위하고,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 속에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 우리 법인은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할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바, 민노총 카라 분회와의 원만한 교섭을 위해 <첨부>와 같이 제안합니다.

첨 부 : 민노총 카라 분회와의 원만한 교섭을 위한 제안 사항.

(사) 동물권행동 카라



담당 회계팀장 김수진 02-4760-1207 nekozuki@ekara.org 국장 소연주 대표 전진경
시행 카라-2401-나A-020 (2024.01.22) 접수 ()
우 039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서교동 457-5) / <https://ekara.org>
전화 02)3482-0999 전송 02)3482-8835 / info@ekara.org / 공개

민노총 카라 분회와의 원만한 교섭을 위한 제안 사항입니다.

1. 2024.1.19. 민노총 카라 분회 최민경 사무장으로부터 수신된 공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합니다.
2. 아래 내용과 같이 사실관계를 확인드리며, 이후로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단정과 예단, 협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여론 호도 행위의 중지를 요청드립니다.
3. 사실은 그 자체로 사실이어야 합니다. 지금 민노총 카라 분회의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양 몰고 가는 행위, 즉, 일방적 단정에 의한 공문서화로 사실이 아닌 게 사실화 될 수 없음을 주지하시고 협의의 정신으로 임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4. 아울러 이 문서와 함께 지난 1월 15일, 3차 교섭 일자와 시간에 대한 카라의 공문을 이메일, 전화 문자와 이미지, 팩스, 그리고 내용증명으로도 다시 보내오니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5. 끝으로 카라는 언제나 성실히 노동조합과 교섭할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실관계 확인 ---

1. 민노총 카라 분회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11시 민노총에서의 3차 교섭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날 여러 선약(별첨 4. 회계감사 별첨 5. 환경부회의 별첨 6. 교섭위원의 재판 참여 일정)이 있던 관계로 카라 사측은 2024년 1월 25일 오전 11시 30분으로 교섭 날짜와 시간 변경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별첨 1, 1월 15일 송신)을 보냈습니다. 공문 수신을 확인하고 교섭 회의 진행을 위해 전화 1회(별첨 2), 문자 1 회(별첨 3)과 같이 연락하며 이후 소통을 했지만 민노총 카라 분회는 일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 2024년 1월 19일, 민노총 카라 분회는 일방적으로 '카라 사측은 3차 단체 교섭에 일방적으로 불참, 우리 노조는 사측의 이러한 불성실한 행태에 대해서 교섭거부로 간주하여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 사측의 교섭 해태에 대해 사과를 요청, 차기 교섭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대표 교섭위원(전진경)에게 문서로 요청' 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3. 그러나 위 공문의 내용과 요구사항은 위 사실에서 보듯 전혀 사실무근이며 인과관계가 전도된 것입니다.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교섭 날짜와 시간을 일방적으로 강권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은 민노총 카라 분회의 업무 처리 문제이지 카라에서 사과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4. 이전에도 민노총 카라 분회는 협의사항인 회의 장소를 일방적으로 민노총 사무실로 거듭 강요하거나, 카라의 소명 실현인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후 행사 준비로 일정을 1회 연기코자 협의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불성실'하다거나 '2번이나 일정 변경을 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기재한 공문서를 보내오고 마치 이게 사실인양 호도한 바 있었습니다.

5. 2024년 1월 19일 보내온 민주노총 카라 분회의 공문은 카라 사측이 먼저 보낸 1월 15일자 3차 교섭 협의 요청 공문(별첨 1)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아닙니다. 이에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며, 사실을 전도하고 임의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일방적으로 '협의 해태' 나 '사과요청' 을 하시는 등 이후 원만한 협의에 장애가 되는 소통의 부재를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

-별첨 내역-

- 별첨 1. 3차 교섭 협의 요청 공문
- 별첨 2. 공문 수신 확인 전화 기록
- 별첨 3. 공문 수신 확인 요청 문자 발송
- 별첨 4. 18일 일정-외부 회계감사
- 별첨 5. 18일 일정-환경부 회의
- 별첨 6. 25일 교섭위원의 재판 참여 일정

동물권행동 카라

수신자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위원장
(경유) 김선기 대표교섭위원, 김선아 조직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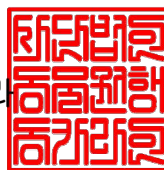
제 목 3차 단체교섭 일정 변경 요청

-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사)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이 인간의 일방적인 착취와 이용에서 벗어나 존엄한 생명으로서 그들 본연의 삶을 영위하고,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 속에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 3차 단체교섭 요구를 공문 <전국민주일반 2024(서울)-0035>으로 수신하였습니다. 카라 내부업무 상황의 사유로 3차 단체교섭 일정 변경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노측 요구 일정 : 2024.1.18.(목) 오전 11:00)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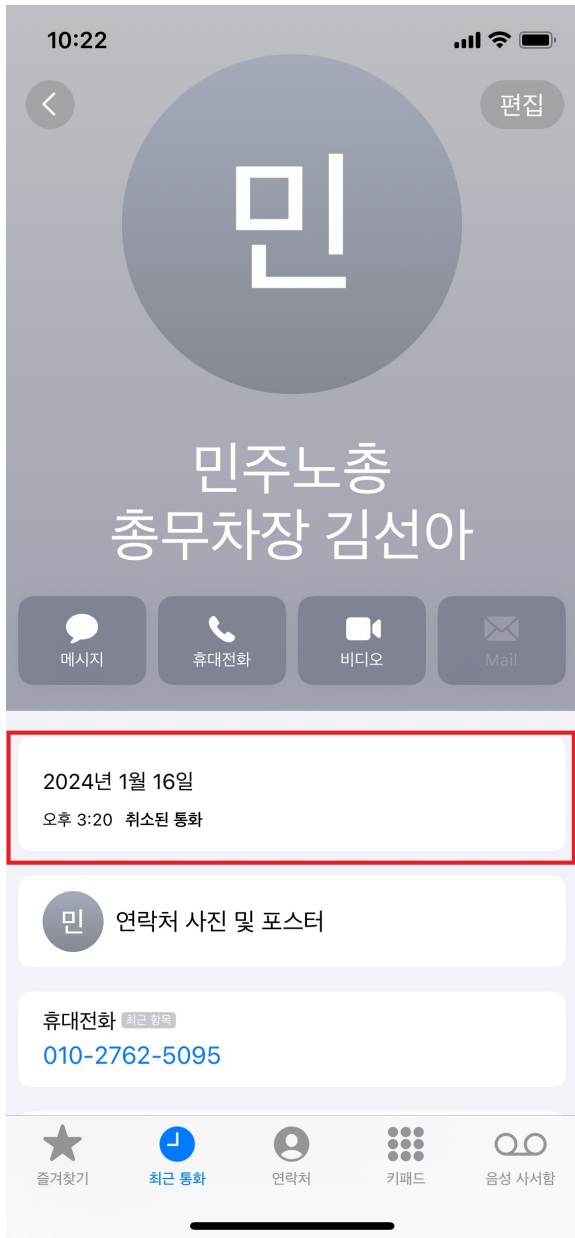
변경 요청 일정 : 2024년 1월 25일 목요일 오전 11:30

(사) 동물권행동 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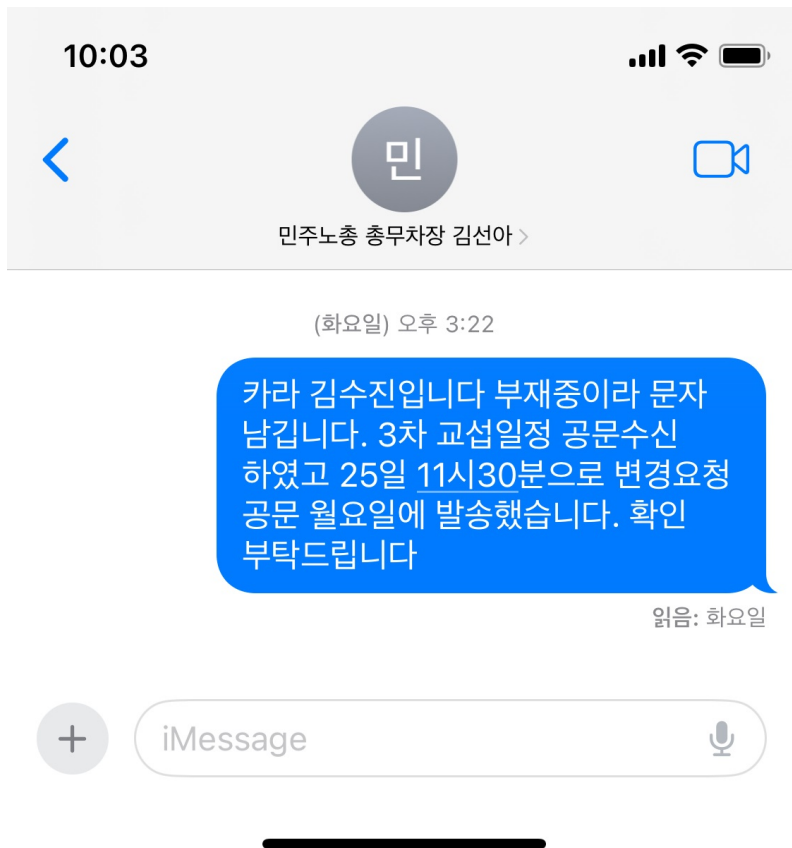


담당 회계팀장 김수진 02-4760-1207 nekozuki@ekara.org 국장 소연주 대표 전진경
시행 카라-2401-나A-017 (2024.01.15) 접수 ()
우 039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서교동 457-5) / <https://ekara.org>
전화 02)3482-0999 전송 02)3482-8835 / info@ekara.org / 공개

별첨 2. 공문 수신 확인 전화 기록



별첨 3. 공문 수신 확인 요청 문자 발송



별첨 4. 18일 일정-외부 회계감사

(사)동물권행동카라

기말감사 업무 종료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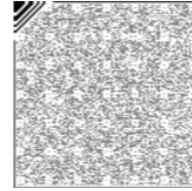
2023년 기말감사 검토사항

2024.01.18-01.19

大成三京會計法人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1분기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 참석 요청

1. 귀 기관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 확정 및 이해관계자 간 협약 체결('22.1.26.) 이후 후속조치 이행상황 공유·점검을 위하여 2024년 1분기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일 시 : 2024.1.18.(목), 13:30 ~ 14:50
- 나. 장 소 :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 AREX B3-10(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78)
- 다. 참 석 자 : 환경부, 사육곰협회, 전문가, 시민사회, 지자체 등
- 라. 주요내용 : 곰 사육 종식을 위한 민·관 협력 로드맵 구상 논의 등

붙임 2024년 1분기 사육곰 민·관협의체 회의 계획 1부. 끝.

환경부 장관



수신자 충남대학교총장,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국립공원공단이사장(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국립생태원장, 청주동물원,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이웨어, 녹색연합, 사단법인 동물권행동카라, 사단법인 곰보금자리프로젝트, 사육곰협회, 구례군수(환경과장), 서천군수(기획예산담당관)

주무관 **조은진** 환경사무관 **이정원** 과장 **문제원** 전결 2024. 1. 15.

협조자

시행 생물다양성과-299 (2024. 1. 15.)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7286 팩스번호 044-201-7261 / dmswls03016@me.go.kr / 비공개(5)


별첨 6. 25일 교섭위원의 재판 참여 일정


2023.12.21 변론기일(민사법정 신관 322호 15:00) 속


2024.01.25 변론기일(민사법정 신관 322호 10:40)


- * 송달내용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물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 * 송달간주(발송송달)는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의하여 서류를 당사자가 직접 송달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체국 접수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 대한민국법원 ↑ 맨위로


홈으로


로그인


전체메뉴


설정


이용안내